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임미애 · 문대림
송옥주 · 박민규 · 박희승
이성윤 · 김 윤 · 이언주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·시·군수의 2배수로 하되,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시·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·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,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‘인구 5만명’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·도의원을 최소 1명

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·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경우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·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·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시·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기존 10%에서 15%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22조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 본문 중 “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”을 “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·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”으로, “100분의 20의”를 “100분의 30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, 인구가”를 “인구가”로, “한다.”를 “하고, 본문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도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第1項 및 第2項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第1項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第3項의”를 “제4항의”로, “100의 10으로”를 “100분의 15로”로 한다.

- ①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·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23조제3항 전단 중 “100분의 10으로”를 “100분의 15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시·도회의의 의원정수) <u><신설></u>	제22조(시·도회의의 의원정수)
	①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·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①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)수의 2배수로 하되, <u>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</u> 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100분의 20</u>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<u>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,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·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----- <u>100분의 30</u> 의----- ----- <u>인구가</u> ----- ----- -----

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 · 시 · 군의 지역구시 · 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 · 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 · 道議會議員選舉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
③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9명으로 한다.

④ 比例代表市 · 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 · 道議員定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

-----하고, 본문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 시 · 도별 지역구시 · 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-----

-----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-----

-----.

⑤ -----제1항 및 제2항-----제4항의-----
-----100분의 15로-----.

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. 다만, 算定된 比例代表市·道議員 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 으로 한다.	-----. ----- ----- -----.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 원정수) ①·② (생략) 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 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<u>100분의 10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	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 원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15</u>-----. -----.